##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19

발의연월일: 2024. 7. 3.

발 의 자:한정애·장철민·김준형

이학영 · 송옥주 · 부승찬

이수진 • 문진석 • 위성곤

서영교 · 이강일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함)을 하려는 자는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함. 여기서 자기자본 요건은 등록대상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시·도지사 등록대상인 법인의 경우 5천만원 이상, 법인이아닌 자인 경우 1천만원 이상인 한편, 금융위원회 등록대상은 3억원이상이고,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요건이적용되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불법 대부업자들의 범죄 행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들은 법정 최고 이율(연 20%)의 250배에 달하는 5,000%의 폭리를 취하거나 고금리 사채 미상환을 빌미로 나체사진을 받아내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인권유린적인 불법 추심으로 경제적 약자들의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기 위하여 일본의 대부업자 등록제도 중 최저 순자산액 기준을 참고하여 도입함으로써 불법·영세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모든 대부업등의 등록대상에 대한 순자산액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하고,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등록 이후 자산보유액을 3억원 이상 유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금융이용자를 불법추심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의5 및 제13조).

법률 제 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순자산액"이란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의5제1항제1호 본문 중 "1천만원"을 "3억원"으로,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순자산액"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 중 "1천만원"을 "3억원"으로, "자기자본"을 "순자산액"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1호의 요 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1의3.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2항제2호의 요 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 후 제3조제3항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7. "순자산액"이란 자산의 합계	
	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	
	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3조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u>1천만원</u> 이상으로서 대통령	1. 3억원	
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	<u>순자산액</u>	
<u>는 순자산액)</u> 을 갖출 것. <u>다</u>	<u>&lt;단서 삭제&gt;</u>	
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u>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	2	
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1천만원</u> 이상으로서 대통령	2. <u>3억원</u>	
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다만, 대 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3. ~ 7. (생략)

- ① (생략)
- ②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 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 여야 한다.
- 1. (생략)

<신 설>

<신 설>

2. ~ 8. (생략)

③ ~ ⑧ (생 략)

<u>순자산액</u>	<단서	삭
제>		

3. ~ 7. (현행과 같음)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 ① (현행과 같음)

호 • 제1호의2 • 제1호의3-----

- 1. (현행과 같음)
- 1의2.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 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1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1의3.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 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2항제2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2. ~ 8. (현행과 같음)
- ③ ~ ⑧ (현행과 같음)